

모금과 구호

1996

전국재해대책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RELIEF





본협의회 회관 전경

인사말씀



우리는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인명 250명, 재산피해 4천 2백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월의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사고에 이어 6월에는 전대미문의 삼풍백화점붕괴참사까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고, 7, 11월에는 연이은 유조선 침몰로 남해안일대가 시꺼먼 기름띠로 오염되는 등 대형재난으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8월에는 중부지방일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5천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으며, 우리협의회에서는 온국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조속히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2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성금품이 접수되어 정부 구호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복구자금 등으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우리협의회에서는 차후에 예견되는 각종재난에도 대비하여 생활필수품을 비축하고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돕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6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종률

본 협의회 역대회장



초대회장
俞 鎮 午
(前) 高麗大學校 總長



창립 및 6대회장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3대회장
李 寛 求
韓國新聞
放送編輯人協會 初代會長



5대회장
高 在 旭
(前) 東亞日報社 會長



4대회장
林 炳 稜
初代 外務部長官



7대회장
柳 建 浩
(前) 朝鮮日報社
主筆 및 代表理事



8대회장
崔 鐘 律
京鄉新聞社 副會長

95년도 수재의연금 모집 및 사용공고

국민 여러분!

금년 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본협의회에서는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온국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조속한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동안 모집된 금액과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수재의연금 모집 내역

가. 수재의연금 모금총액	16,037백만원
방송사 접수분	8,905백만원
신문사 접수분	6,028백만원
본 회 접수분	1,104백만원
나. 수재의연물품 각종 생활필수품 40만점 (환가액 54억원 상당)	

2. 수재의연금 사용 내역

가. 의연금 지원총액	18,280백만원
(부족분 22억원은 본회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서 집행되었음)	
사망 · 실종자위로금	733백만원
장 기 구 호 비	1,089백만원
생 계 및 위로금	2,115백만원
침수주택보조비	4,978백만원
주택복구비	1,890백만원
무상양곡	7,475백만원

나. 수재의연품

의류 및 각종 생활필수품 40만점은 수재해지구 해당 시 · 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 배분되었음.

1996년 6월

전 국 재 해 대 책 협 의 회
회 장 최 종 를

회원명단

(가나다 順)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顧 問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786 - 1754
"	黃 溫 順	徽慶學園 理事長	244 - 2304
名譽會長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主筆 及 代表理事	542 - 5503
會 長	崔 鐘 律	京鄉新聞社 副會長	730 - 5151
副 會 長	李 嫵 淑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會長	794 - 4450
"	高 成 光	大田文化放送 社長	(042) 222 - 3000
理 事	盧 永 台	韓國放送協會 常任理事兼事務處長	735 - 7117
"	朴 淑 鉉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	712 - 0305
"	孫 宣 奎	韓國新聞協會 事務局長	733 - 2251
"	李 柄 雄	大韓赤十字社 事務總長	755 - 9301
"	李 尚 根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 事務局長	732 - 1726
"	張 在 國	한국일보社 會長	724 - 2114
"	崔 鍾 賢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780 - 0821
"	洪 斗 枝	韓國放送公社 社長	781 - 2300
"	洪 錫 炫	中央日報社 社長	751 - 5114
監 事	朴 龍 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事務總長	576 - 5892
"	張 大 煥	每日經濟新聞社 社長	2626 - 360
常任理事	金 健 宇	全國災害對策協議會 事務局長	3272 - 0123
會 員	姜 大 樸	全國劇場聯合會 會長	735 - 3382
"	姜 成 求	(株)文化放送 社長	784 - 2000
"	具 平 會	韓國貿易協會 會長	551 - 0114
"	金 甲 現	大韓YWCA聯合會 會長	774 - 9702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會 員	金 東 圭	大韓住宅公社 社長	513 - 3114
"	金 募 姪	大韓家族計劃協會 會長	634 - 8212
"	金 炳 琨	東亞日報社 會長	361 - 0114
"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16 - 3502
"	金 雲 龍	大韓體育會 會長	420 - 3333
"	南 時 旭	문화일보社 社長	3701 - 5114
"	朴 相 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85 - 0010
"	朴 鍾 植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240 - 3114
"	方 相 勳	朝鮮日報社 社長	724 - 5114
"	卞 柱 仙	한국걸스카우트연맹 總裁	733 - 6801
"	孫 柱 煥	서울신문社 社長	735 - 7711
"	宋 月 珠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院長	739 - 5590
"	承 炳 九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事務總長	780 - 1991
"	申 榮 均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會長	744 - 7872
"	元 喆 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397 - 5114
"	尹 赫 基	(株) 서울放送 社長	780 - 0006
"	李 南 周	韓國YMCA全國聯盟 事務總長	754 - 7891
"	李 允 鍾	林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416 - 9416
"	李 俊 容	韓國製粉工業協會 會長	753 - 1659
"	池 三 峰	서울特別市 醫師會 會長	676 - 9751
"	池 槟 道	大韓穀物協會 會長	583 - 2111
"	車 一 錫	國民日報社 社長	7054 - 114
"	黃 煥 宗	世界日報社 社長	799 - 4114

設立 趣旨 및 沿革

1. 趣 旨

每年 뜻하지 않게 發生되는 각종 災難으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人命과 財產의 損失을 당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도 이러한 災難에 대하여 그豫防과 事後對策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制限된 財政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이 겪는 災難을 政府의 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포끼리 서로 돋고 동포애 발양으로 불의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罷災民에 대한 復舊의 발판이 되어 주고자 災害救護를 위한 常設機關으로 本協議會를 設置하고 災害募金을 一元化하여 迅速하고 效率的인 災害救護事業을 展開코자 합니다.

2. 目 的

不時로 發生하는 災害의 復舊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國民義捐金品의 募集과 관리 및 配分을 통하여 隣保相助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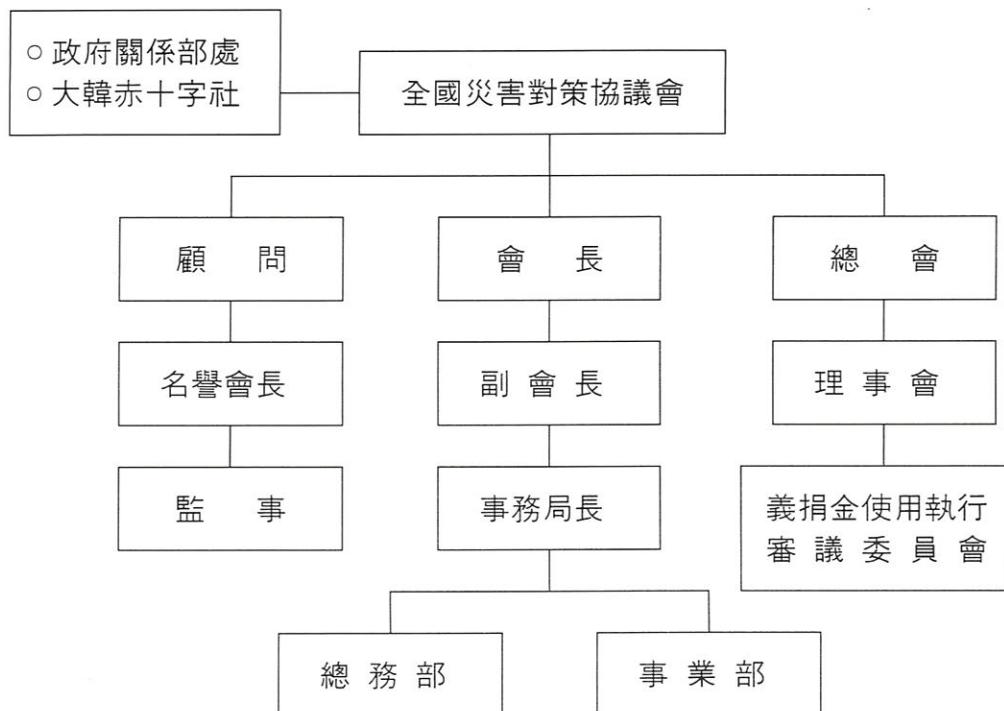
3. 沿 革

- (1) 1961년 7월 13일 全國水害對策委員會 組織
- (2) 1961년 10월 26일 全國災害對策委員會 創立總會
- (3) 1964년 9월 3일 保健社會部에 社會團體 登錄
- (4) 1964년 10월 31일 全國災害對策協議會로 改稱
- (5) 1968년 10월 15일 社團法人으로 改編

4. 事 業

- (1) 災害復舊 및 救護를 위한 國民義捐金品 募集事業
- (2) 前號事業에 대한 企劃, 統制, 調查研究 및 弘報事業
- (3) 災害罹災民 救護事業
- (4) 其他 本會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5. 機構表



本會 事務局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총회 및 이사회 장면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긴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모포와 버너 등 각종 생활필수품이 창고에 비축되어 있다.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고추대가 쓰러지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영남지방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양식어장과 비닐하우스가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5년 8월 23일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가옥이 파손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경북 영주시)





'95년 8월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가 침하되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경북 영주시 단산면 도로)





'95년 8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미하천일대가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95년 8월 25일 새벽 충북 괴산에서 폭우로 인하여 교각이 무너져 열차가 탈선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수재민을 돋기위하여 방송협회에서 모금한 89억원을 한국방송협회 홍두표회장과 회장단이 본회 최종률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재해 이재민구호를 위해 본회에 접수된 국민성금 101억원을 심대평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본회 이종민부회장.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고자 각계각층에서 기탁되어온 생활 필수품 등 각종 구호품은 신속하게 재해지에 수송되었다.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민·관·군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성금이 포함되어 건립된 수해복구주택.(경기도 용인군)



태풍과 집중호우

◆ 태풍의 발생과 종류

태풍은 북반구의 북동부역풍과 남반구의 남서계절풍이 해수온도 섭씨 26도 이상의 적도부근인 북위 5~20도, 동경 1백10~1백80도에서 부딪쳐 발생하는 약한 열대성 저기압이 모체다.

열대성저기압이 해상의 수증기를 빨아 들이면서 에너지를 축적,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이고 폭풍우를 동반하면 비로소 태풍으로 인정받는다.

이때 지구자전으로 인해 태풍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공기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반경 2백~5백km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80개정도가 발생하는 태풍은 발생 해역별로 태풍(북태평양 남서해상), 허리케인(북대서양 카리브해), 사이클론(인도양), 월리월리(호주부근) 등 각기 다른이름으로 불린다.

이 중에서 태풍은 매년 30개정도가 발생해 3개안팎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태풍은 최대풍속과 중심기압에 따라 특A급(초속 65m 이상, 9백20헥토파스칼(hpa)이하), A급(초속 50~65m, 920~950hpa), B급(초속 30~50m, 950~980hpa), C급(초속 17~30m, 980hpa) 등 네가지로 나뉜다.

◆ 태풍의 진로와 이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음에는 발생지에서 적도 부근의 동풍에 밀려 북서진하던 태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한 6월과 11월에는 대만아래를 거쳐 중국대륙쪽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한 7월~10월에는 북위 25~30도까지 북상한 뒤 포물선형태의 북태평양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꾼다. 태풍은 편의상 발생 순서에 따라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

번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기상청에서 (1호)부터 지정해 시작하며, 이름은 연도에 관계없이 팜에 위치한 美태풍합동경보센터에서 알파벳 순에 따라 1개조 21개씩 모두 84개의 남녀이름을 교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름은 발생하는 태풍 모두에게 지정되는데 반해 번호는 일본기상청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붙여진다.

주요 태풍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태풍 이름	내습 년월일	피해 지역	사망 · 실종	재산 피해
사 라	59. 9.10~17	영 · 호남, 영동	849	204,302
카 멘	60. 8.22~24	영남, 제주, 서해중부	159	8,207
노 러	62. 8. 2~ 4	중부, 호남, 제주	52	316
오 펄	62. 8. 7~ 9	중부, 호남	123	1,329
설 리	63. 6.18~22	영 · 호남	107	45,927
헬 렌	64. 8. 1~ 3	제주, 호남, 중부서해안	41	2,547
풀 리	68. 8.15~17	제주, 영 · 호남	73	9,049
올 가	70. 7. 3~ 7	남부, 영동	84	73,782
빌 리	70. 8.30~31	제주, 호남, 서해지방	38	62,913
리 타	72. 7.25~26	영 · 호남, 제주	54	9,432
풀 리	78. 6.19~20	영남	25	6,005
카 멘	78 .8.13~20	제주남쪽	34	52,042
어 빙	79. 8.16~17	제주, 경북, 호남	17	82,930
쥬 디	79. 8.25~26	제주, 서해, 동해안	20	112,403
애그네스	81. 9. 1~ 4	남해, 동해안	139	131,395
세 실	82. 8.13~14	서해안 지방	68	30,136
홀 리	84. 8.20~21	제주, 전남, 부산지방	6	3,174
키 트	85. 8. 9~11	제주, 전남, 경북	16	4,877
브 렌 다	85.10. 5~ 7	제주, 영남, 동해안	57	35,199
베 라	86. 8.26~29	영 · 호남 및 중부지방	40	50,703
셀 마	87. 7.15~16	"	345	496,228
다 이 너	87. 8.30~31	남부지방	73	115,756
쥬 디	89. 7.28~29	경남, 남해안지방	20	145,018
글래디스	91. 8.22~24	영남지방	103	262,952
로 빈	93. 8. 8~11	영 · 호남, 강원	6	94,471

(피해액은 95년 가격기준)

재해의 분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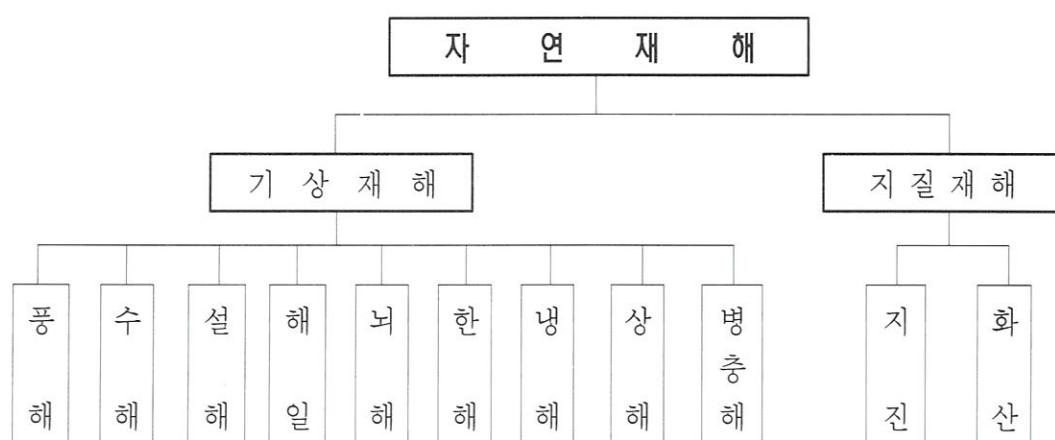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재해(인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의 개념을 정의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는 몇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①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②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③ 재해발생 장소에 의한 분류 ④ 재해대상에 의한 분류 ⑤ 피해의 직·간접성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재해발생 원인과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천재)와 인위재해(인재)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해서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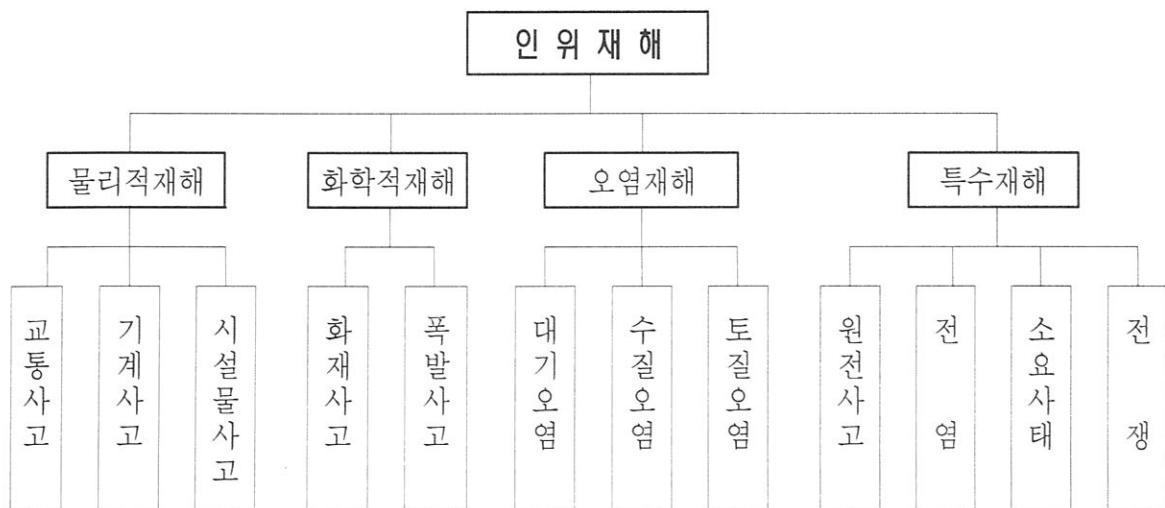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정도 크기의 외력을 고려할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제재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인위재해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인간의 부주의,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인간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야기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이 있다.

또한 산업발달에 수반되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재해들은 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추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핵발전소, 화학공장의 가동, 농약의 개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염과 자연파괴, 생태계 파괴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재해를 위와 같이 원인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자연재해(천재)와 인위재해(인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재해가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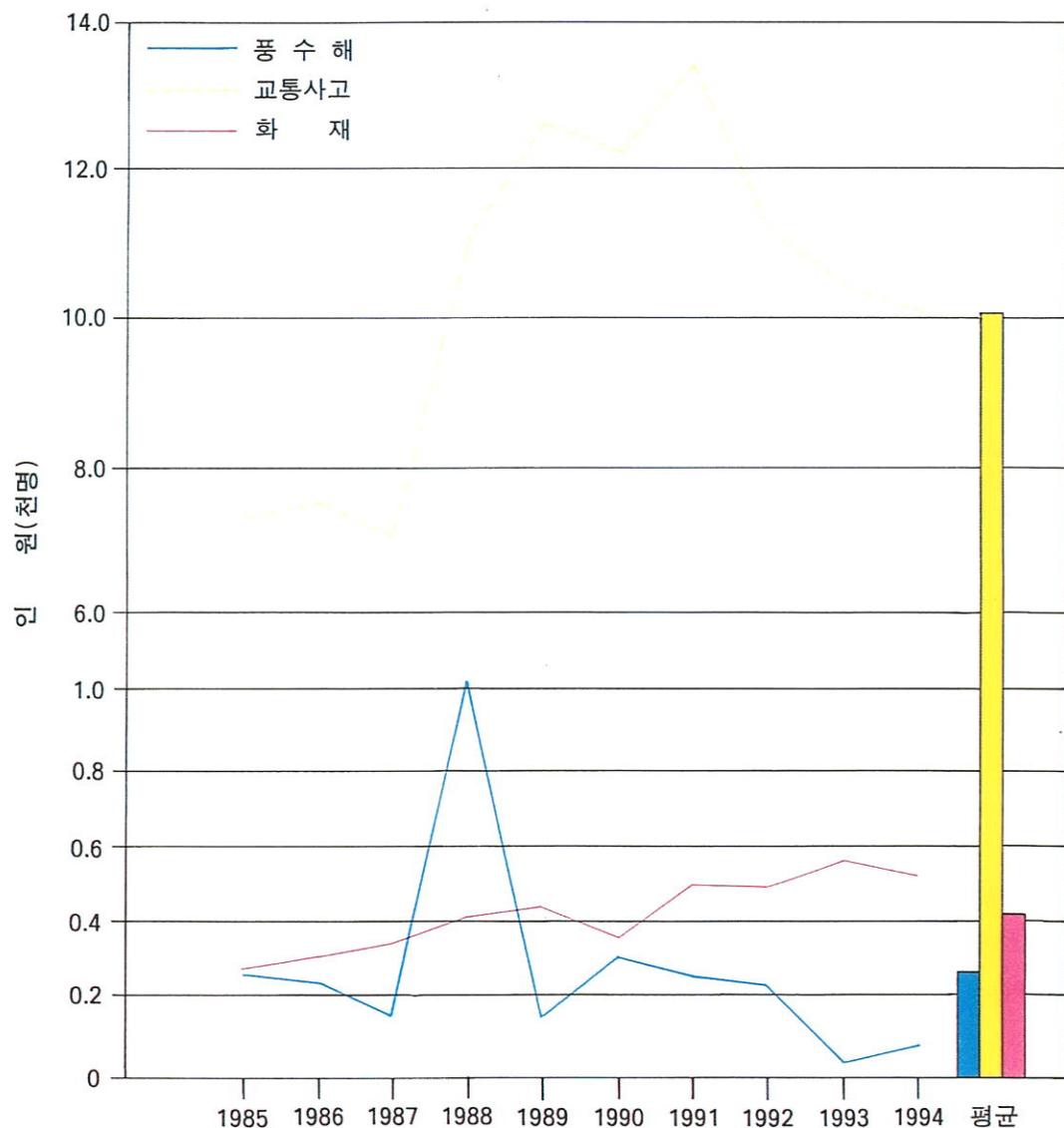
2.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자연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급성재해와 만성재해로 나눌 수 있다. 급성재해란 그 발생과 진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재해로서 폭풍, 홍수, 산불, 해일, 산사태, 위험물질 누출, 폭발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재해란 그 진행이 느린 재해로서 전염병,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와 환경파괴 등이 있다.

이 분류의 의미는 재해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정과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대응과 피해복구의 사전준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자료의 전달과 교환을 통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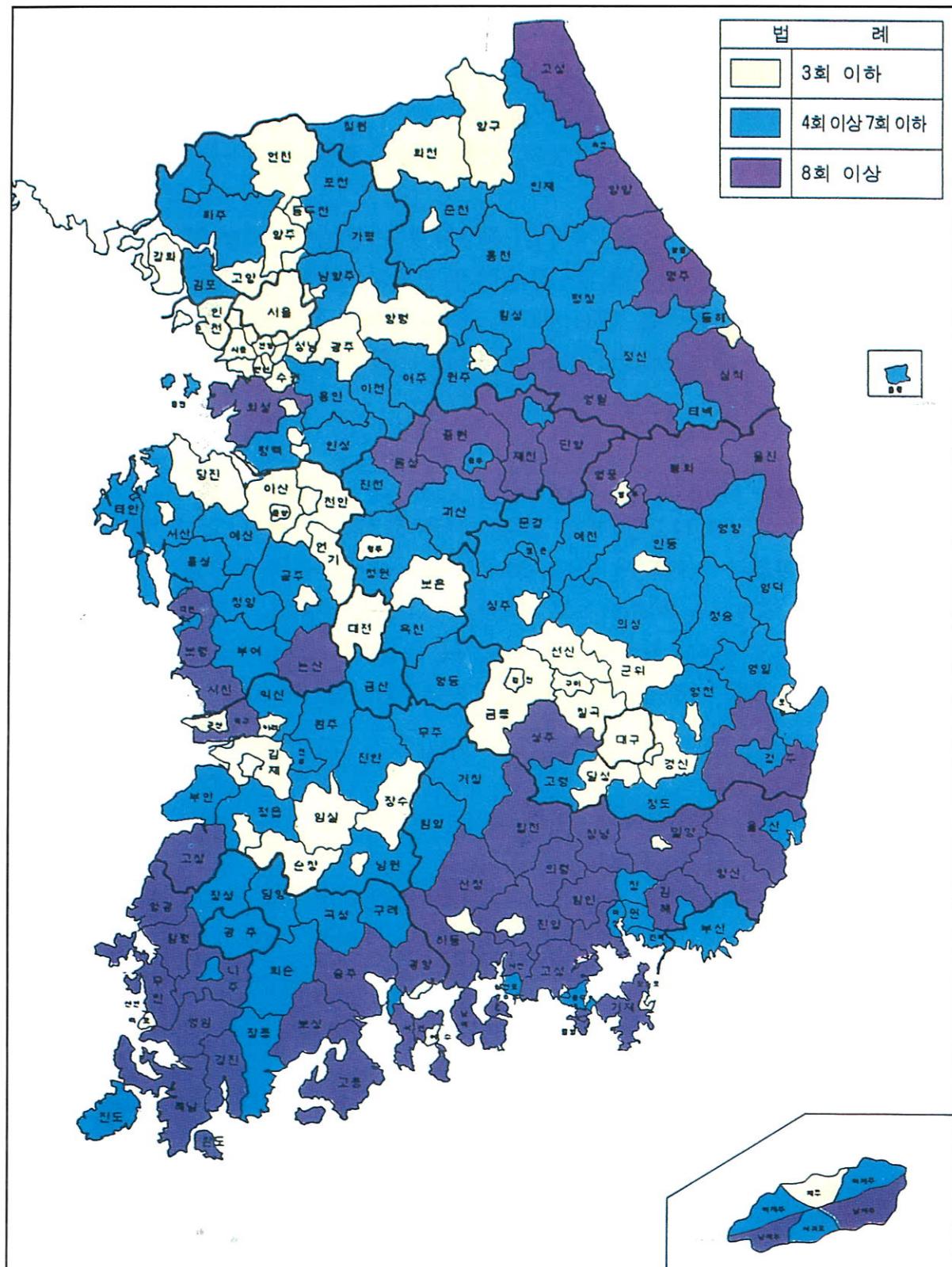
급성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하여 급격하고 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 화재 · 교통사고의 인명피해 현황



중앙재해대책본부자료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회수



중앙재해대책본부 자료

우리나라 가뭄 실상

1. 가뭄의 정의

가뭄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우나 광범위한 대기중의 지속적인 수분 고갈로 수문학적 가뭄의 원인이 되는 기상학적 가뭄과 특정유역이 필요로 하는 용수의 공급부족으로 농업가뭄의 원인이 되는 수문학적 가뭄과 포장의 토양수분 부족으로 농작물의 생산량과 질에 영향을 주는 농업가뭄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Palmer(파아머) 지수에 의한 지역별 기상학적 가뭄분석과 Hershfield(허스필드)의 방법에 의한 관개기간의 초과월강수부족량과 월평균부족량과의 비율로 농업가뭄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986~88년 연속가뭄이후 USCE에서 가뭄대책 물관리 수립과 National Drought Atlas(내셔널 드라우트 아틀라스) 작성, 4개지역에서 DPS를 개발하고 있다.

2. 최근의 연속가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13회, 백제 27회, 신라 59회의 가뭄이 고려시대에는 36회, 조선시대에는 99회로 기록되어 있다. 20세기 들어 가장 적은 연평균 강수량은 1943년의 791mm와 1939년의 809mm이고, 1939년, 1968년, 1978년, 1982년, 1994년이 5대 가뭄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의 2년 연속가뭄은 1927~29년, 1937~39년, 1942~44년, 1967~68년, 1977~78년, 1981~82년, 1994~95년 등 약 1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

3. 1994~96년 가뭄피해와 대책

1) 강수량과 저수율

1994년 가뭄은 6월부터 시작 여름철 장마가 실종되어 전국 강수량은 988mm로 연평균 강수량의 75%이며 지역별로는 대전지방 858mm, 전남지역은 896mm, 전북지역은 770mm로 남부지방이 심하였다. 저수율도 물이 가장 필요한 7월말 현재 28%로 평년 76%보다 크게 부족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전남 15%, 경북 34%, 경남 20%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고갈된 저수지가 6,963개소였다.

1995년 6월 30일 현재 전국 강수량은 364.6mm로 평균강수량 505.9mm의 72%로 141.3mm가 부족하였다. 저수율도 38%로 평년 61%보다 적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 20%, 전남 46%, 경북 36%, 경남 61%로 많은 저수지가 고갈되었다가 7월 장마로 해갈되었다.

1996년 2월말 전남지방 평균강수량은 40.8mm로 평년 78.8mm의 52%에 불과하고 47개 수원지 저수율은 19.5%이고, 주암댐 등 광역상수원 저수율도 45%정도이다.

2) 가뭄 피해상황

가뭄 피해는 진행속도가 완만하고 피해 또한 가시적이지 못하여 피해조사가 잘 안되고 있으며 생공용수 및 농업피해 뿐만 아니라 발전중단, 자연생태계와 하천 수질악화, 산불 발생 등에 의한 가뭄 피해도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 생공용수 피해

1994년에 이어 겨울 가뭄으로 계속된 1995년 가뭄은 2월 현재 합천댐 23%, 안동댐 22%, 영천댐 16%, 영산강 4대호 24% 등 남부지방의 저수율은 20%정도였다.

이 기간에 제한급수 지역은 전국 49개 시, 군 특히 중부이남 지역에서 생활용수 부족을 겪었다. 1995년 7월말 홍수로 전국이 해갈되었다. 1996년 3월 현재 남부지역에서는 78.2만명이 격일제, 3일제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낙동강 수질이 상수원 취수한계에 가깝게 악화되고 있다.

1995년에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조업단축 및 중단의 어려움을 겪었다. 포항지역의 1일 공업용수 수요량은 33.4만m³이나 공급량은 24.2만m³에 불과하여 9.2만m³이 부족하였다.

1996년 3월 현재도 이 지역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업용수 부족에 의한 피해조사(국토개발연구원, 1992, 용수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1990년 울산지역 345개 현장의 물부족량은 2.2~21.7만m³/일에 이르고 가동률은 15~30%에 그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4조원~4.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94~96년의 연속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과 경제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나. 농업가뭄 피해

1994년의 가뭄은 벼의 경우 고갈, 균열, 고사 등 총 175,190ha가 가뭄피해를 입었으며 쌀생산량은 3,513만섬이었다. 밭작물의 경우 콩, 고추, 채소 등 총 78,190ha가 피해를 받았다. 가축피해는 닭 138만수, 돼지 12,800두, 소 353두가 폐사되었다.

1995년의 가뭄은 벼의 경우 총 20,370ha가 가뭄피해를 입었으며 쌀생산량은 3,260만섬으로 전년대비 250만섬이 감소되었다. 저수, 절수, 용수개발을 가뭄극복 3대운동으로 전개하여 27만ha의 모내기 용수를 확보하였다. 1995년에는 가뭄대책비로 4,827억원이 지원되었다. 저수운동으로 저수지 물채우기 8.7만ha, 논물채우기 4.9만ha, 논물가두기 9.9만ha 등 23.4만ha의 모내기 용수를 확보하였다. 절수운동으로 건답직파 11.7만ha, 육모상자 5천ha를 보급하였다. 용수개발로 암반관정 3천공, 소령관정 3만공으로 2.4만ha에 급수하였다. 하천굴착 783개소, 들샘 992개소, 간이보 73개소 기타 833개소의 간이용수원을 개발하여 19,300ha에 급수하였으며 23.6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양수기 15.9만대, 송수관 3,076km, 중장비 14,9만대가 지원되었다. 922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에서 3천4백만m³를 준설 6,400ha의 관개용수를 확보하였

다. 1996년 3월 6일 현재, 농림수산부는 전남, 경북, 경남의 17개 시군에 가뭄대책비 1,250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542개소를 준설하고, 암반관정 1,100개공을 개발하여 5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3) 가뭄대책

비상가뭄대책은 대체로 일시적이고 소모적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평상시에 가뭄극복을 위한 항국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생공요수와 농어촌용수의 단계별 제한급수, 지하수개발, 다단양수, 저수지 물채우기, 저수지 준설, 하천굴착, 논물가두기 등 비상용 수원을 개발한다.

94~95년 비상가뭄대책 시행 과정에서의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①가뭄대책의 사전 준비 기간이 짧았고 ②시, 군 담당자의 행정업무와 가뭄대책업무가 가증되어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고 ③장기 기상예보와 가뭄의 단계별 대책수립이 미흡하였고 ④가뭄피해의 심각성과 절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협력이 필요하고 ⑤가뭄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할 자문기구 설치 등이 지적되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상수도관 누수방지, 중수도 도입, 음용수 전용공급, 저소율에 따른 댐과 저수지의 연계운영 등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지역별, 용수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른 중규모 다목적댐과 농어촌저수지 등 수자원 개발이 있다.

4. 가뭄평가와 예측 필요성

이를 위하여 우선 수계별, 시기별, 저수율별로 급수제한과 중단, 조업제한과 중단, 농작물피해, 자연생태계와 하천수질악화, 발전중단, 산불발생 등 가뭄의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역수문모형으로 현재의 유역토양수분을 추정하고 과거의 유사한 패턴 또는 추계학적으로 일강수량을 예측하여 일정기간후의 가뭄진행을 예측하는 방법은 개발할 수 있다.

이 가뭄예측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제한방류와 절수 등 물 관리대책과 지하수 개발을,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개발과 개보수 계획을 세운다. 가뭄모형으로 장기간 강수자료로 모의 발생하여 수문학적 및 농업가뭄의 계절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뭄분포도를 작성하여 특정지역에 발생한 가뭄피해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수립한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창립으로 기상학적, 수문학적 및 농업가뭄의 종합평가와 예측모형을 개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료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수자원공사

재해복구사업

1. 응급복구

재해가 발생되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응급복구가 행해진다.

2. 항구복구

피해를 입은 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항구복구 공사가 시행되며 원상복구 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지구는 추가사업비를 들여 유사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재해구호 및 복구 기준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 기준은 불의에 큰 피해를 당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사람들과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의 가장 큰 의의는 재해로 파괴된 공공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신속히 구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과 지방 또는 관련기관과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개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정한 수준에 한정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해복구는 중앙정부의 항구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지방정부나 개개인의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시, 군에서 피해액을 1차적으로 산정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각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하며 피해가 큰 경우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 시, 군의 경우 시, 군당 피해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 지원 대상이 되며, 광역시의 구나 인구 30만명이상 시의 경우는 11억원과 특별시의 구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80년이후 재해피해 현황

연도	종목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건 물 (천원)	선 박 (천원)	농 경 지 (천원)	농 작 물 (천원)	공공시설 (천원)	기 타 (천원)	합 계 (천원)
1980		279	53,860	115,762	11,513,667	7,367,206	45,956,971	86,085,522	146,734,254	21,439,939	319,097,559
1981		216	18,306	149,583	4,326,554	2,867,683	14,447,714	21,866,402	106,539,131	12,618,589	162,666,073
1982		121	6,609	37,007	1,020,826	1,275,074	5,605,768	34,604,146	51,260,049	10,195,176	103,961,039
1983		91	1,348	25,061	2,629,611	1,289,403	115,384	12,630,273	5,411,672	2,580,435	24,656,778
1984		265	364,231	140,380	11,185,411	826,341	23,286,411	82,567,683	152,561,475	44,182,657	314,609,978
1985		250	72,257	126,178	1,499,212	6,632,771	1,977,114	89,256,304	55,173,041	16,816,633	171,355,075
1986		156	99,114	87,855	2,339,594	2,897,476	1,996,196	209,995,254	47,559,490	19,671,278	284,459,288
1987		1,022	272,277	299,466	17,409,454	24,459,854	85,975,972	285,871,470	684,188,919	243,258,827	1,341,164,496
1988		143	5,066	17,470	848,825	1,835,153	13,042,709	16,748,438	102,112,769	15,999,690	150,587,584
1989		307	92,599	120,369	7,195,110	6,456,531	17,793,638	279,388,834	248,447,841	109,137,645	668,419,599
1990		257	203,314	129,314	10,768,646	3,543,082	52,485,564	171,308,128	322,673,209	197,962,853	758,741,482
1991		240	29,573	61,258	5,520,424	2,443,212	42,795,048	-	331,899,133	48,920,058	431,577,875
1992		40	965	13,969	106,129	1,186,794	1,517,410	-	16,416,551	7,035,630	26,262,514
1993		69	13,779	58,483	1,260,466	11,417,890	10,826,130	-	164,986,821	23,506,402	211,997,709
1994		72	1,852	6,275	582,953	-	11,449,748	-	90,735,591	57,753,200	160,521,492
1995		158	30,408	79,252	4,959,000	6,958,000	60,987,000	-	434,141,000	93,901,000	600,946,000
합 계		3,686	1,265,558	1,467,682	83,165,882	81,456,470	390,258,777	1,290,322,454	2,960,840,946	924,980,012	5,731,024,541
연평균		230	79,097	91,730	5,197,868	5,091,029	24,391,174	80,645,153	185,052,559	57,811,251	358,189,034

('95년도 가격기준)

80년도이후 인명피해 현황

(1980~1995)

년 도	합 계	사 망 · 실 종			부 상
		소 계	사 망	실 종	
1980	1,597	447	447	-	50
1981	442	350	350	-	92
1982	279	215	215	-	64
1983	242	153	153	-	89
1984	629	364	364	-	265
1985	380	332	332	-	48
1986	259	156	93	63	103
1987	1,648	1,022	586	436	626
1988	160	143	64	79	17
1989	383	307	207	100	76
1990	305	257	181	76	48
1991	422	240	170	70	182
1992	42	40	17	23	2
1993	116	69	40	29	47
1994	115	72	29	43	43
1995	189	158	158		31
합 계	7,208	4,325	3,406	919	2,883
평균	450	270	213	5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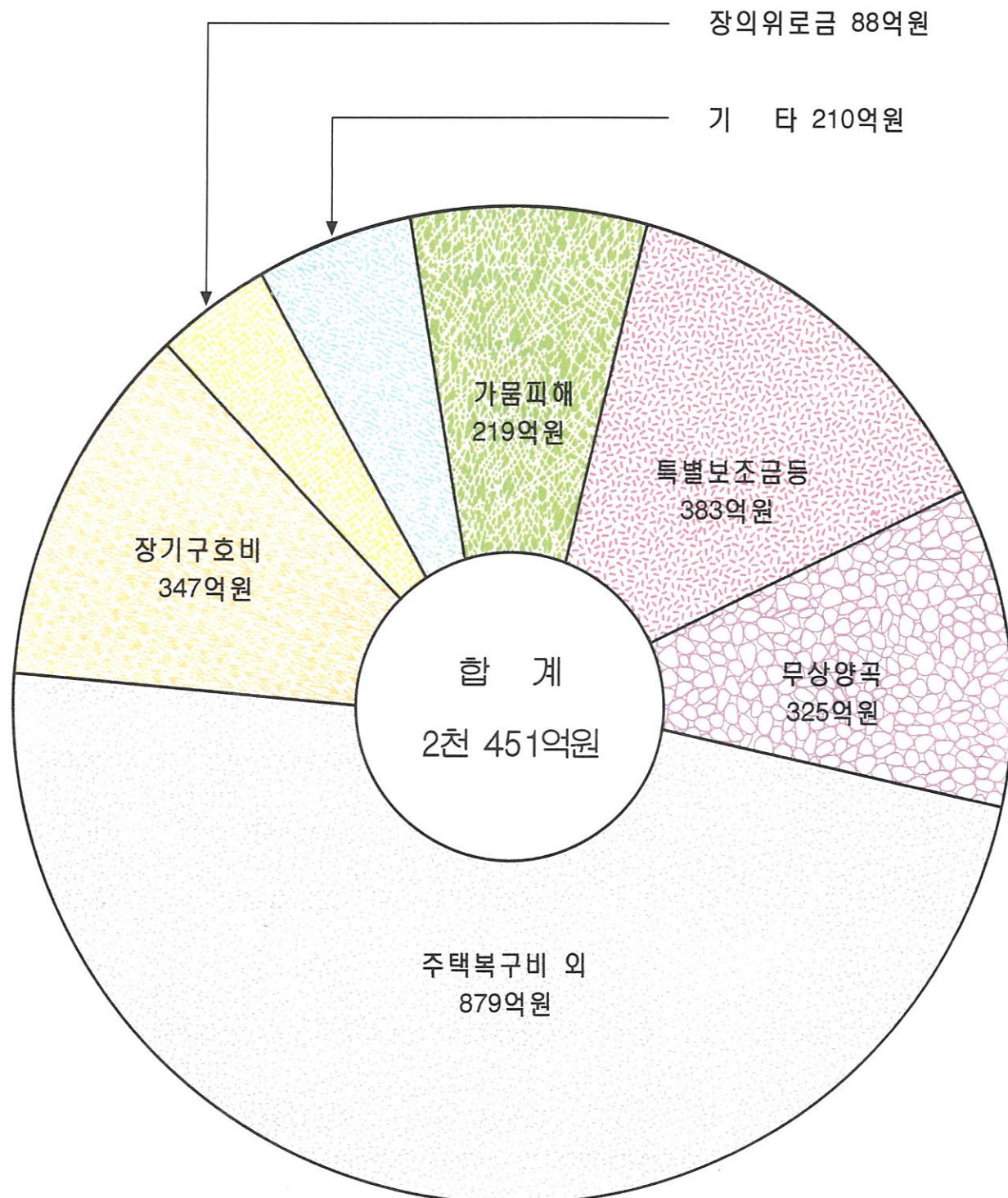
80년이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모금 및 이자 수 입 액	구 호 비			
		주택복구비	긴급 및 장기 구 호 비	기 타	합 계
1980	10,164,569	3,588,063	1,982,069	2,039,927	7,610,059
1981	8,133,696	1,787,439	3,855,636	13,315	5,656,390
1982	1,622,769	451,182	2,065,386	320,215	2,836,783
1983	1,002,498	407,235	43,751		450,986
1984	21,697,612	1,212,858	20,589,616	39,025	21,841,499
1985	1,490,334	617,829	1,990,292	253,063	2,861,184
1986	425,758	773,612	2,669,869	244,503	3,687,984
1987	41,945,084	6,005,507	32,367,305	246,551	38,619,363
1988	2,251,600	592,485	2,164,340	126,623	2,883,448
1989	23,258,930	2,419,031	16,146,368	272,307	18,837,706
1990	53,211,981	2,510,977	36,043,174	951,574	39,505,725
1991	31,987,536	1,400,899	18,129,025	149,835	19,679,759
1992	4,770,151	50,650	2,776,795	218,318	3,045,763
1993	8,427,975	653,321	27,491,892	5,707,175	33,852,388
1994	26,795,725	316,030	24,617,005	288	24,933,323
1995	17,527,940	1,894,830	16,899,313	16,861	18,811,004
합 계	254,714,158	24,681,948	209,831,836	10,599,580	245,113,364

('95년도 가격기준임)

80년이후 도료로 본 재해구호 현황



('95년도 가격기준임)

의연품 총 접수내역

(1961-1995)

품 명	단 위	단 가	총 수 량	환가액 (천원)
의 류	점	35,000원	6,734,395	235,703,825
침 구 류	장	20,000원	140,893	2,817,860
양 곡 류	kg	1,200원	402,371	482,845
라 면	상자	6,000원	63,265	379,590
신 발 류	켤레	20,000원	102,545	2,050,900
식 기 류	점	3,000원	124,472	373,416
생 필 품	"	1,000원	918,190	918,190
약 품	"	2,000원	1,331,983	2,663,966
학 용 품	"	1,000원	1,854,390	1,854,390
건축자재	"	5,000원	749,392	3,746,690
버 너	대	15,000원	13,429	201,435
세 제 류	점	1,000원	187,464	187,464
식 품 류	"	1,000원	352,716	352,716
벽 지	평	1,000원	4,555	4,555
기 타	점	5,000원	1,794,260	8,971,300
합 계			14,774,320	260,709,142

'95년도 가격기준임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수 입	합 계	48,336,848	35,065,747	40,111,821	49,333,238	27,943,482
	전년도 이월금	19,663,088	30,695,831	32,275,536	27,693,285	10,415,542
	모 금 수 입	25,556,667	30	10,200	19,067,869	16,421,556
	이 자 수 입	1,810,872	3,188,206	2,919,439	1,439,684	925,188
	집행잔액반환금	1,306,221	1,181,680	4,906,646	1,132,400	181,196
지 출	합 계	17,641,017	2,790,211	12,418,536	38,917,696	18,811,004
	장 의, 위로금	576,000	20,000	224,000	1,390,000	833,000
	장 기 구 호 비	1,644,738	369,321	2,723,410	875,114	1,294,151
	생 계 보 조 비	22,000		5,500	1,250	40,750
	주 택 복 구 비	1,202,411	46,400	600,104	298,960	1,864,800
	세입주 보조비	53,360		7,350	3,000	30,030
	침수 주택수리	8,295,800	771,300	2,706,700	594,500	4,981,850
	농 어 가 특 별 생 계 비					
	추석절 미구가 세 대 위 로 금	1,890,000		198,800		
	이 재 민 특 별 위 로 금			86,500	12,000	2,074,100
출	월 동 대 책 비	1,761,200				
	무 상 양 곡	2,061,196	1,383,190	559,672	18,789,597	7,475,462
	가 둠 극 복 대 책 비				16,953,000	
	긴 급 생 필 품 구 입 비	97,426	200,000			200,000
	기 타	36,886		5,306,500	275	16,861
	잔 액	30,695,831	32,275,536	27,693,285	10,415,542	9,132,478

'95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언론사	모 금 액	공무원모금	학생모금	기업체모금	일반모금
한국방송공사	6,231,309	591,974	392,572	2,448,905	2,797,858
문화방송	2,421,778	133,198	65,388	1,164,875	1,058,317
서울방송	126,217	21,331	44,176	38,875	21,835
기타 방송 외	125,707	18,479	12,948	72,533	21,747
경향신문	38,054	14,461	951	16,097	6,545
국민일보	225,771	13,320	3,387	25,512	183,552
동아일보	380,510	55,935	152,204	70,394	101,977
문화일보	22,210	3,265	2,288	12,815	3,842
조선일보	1,184,939	94,795	174,186	675,415	240,543
한국일보	671,277	206,082	152,380	217,494	95,321
중앙일보	1,166,967	35,009	3,501	1,079,444	49,013
서울신문	88,001	44,666	8,203	22,677	12,455
한겨레신문	12,006		1,429	8,944	1,633
세계일보	29,952	5,511	599	22,165	1,677
매일경제신문	24,495	1,274		23,025	196
내외경제신문	30,300			30,300	
한국경제신문	14,173			14,173	
지방신문사 외	2,484,018	365,151	255,854	1,433,278	429,735
본회접수분	1,143,872	37,748	131,545	926,536	48,043
합계	16,421,556 (100%)	1,642,199 (10%)	1,401,611 (8.4%)	8,303,457 (50.6%)	5,074,289 (31%)

'96년도 재해모금계획서

1. 목 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 전통은 지금도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협의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어 버리고 깊은 실의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에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조속히 생활안정을 이루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언론기관을 통한 범 국민적인 모금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모금 목표액 : 300억원

3. 모금실시기간 : 재해 발생시

4. 모금내역

가. 기탁모금

나. 지역 : 전국

다. 방법

(1) 재해이재민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 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2)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및 한국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토록 한다.

(국민은행 마포지점 최종률 055 - 25 - 0000 - 241)

(3) 중앙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령하여 재해지역의 이재민 가구수와 재산피해액에 의거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정토록 하고 지방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시, 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정하도록 한다. (재해발생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접수된 물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여 사용토록 한다)

라. 수재 의연금품 기탁자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의연금품은 접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토록 한다.

마.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총무처 장관의 협조를 받아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중사급 이상,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 근무 임직원으로부터 재해민 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으로 현금토록 하고 각 부처별로 집금된 의연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 의뢰한다.

바.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회원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재해민구호를 위한 의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 한다.

사.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한다.

5. 의연금 사용

가. 모금된 의연금은 재해구호비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및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사용한다.(지원기준 별표참조)

나.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토록 한다.

다.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문공고를 통하여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한다.

※ 지원기준표 첨부

'96년도 구호비 지원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제정)

구 분	종 별	단 위	지 원 액	재 원	
사망자 및 실종자	위로금	구 구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의연금 100%	
부상자	"	1인	2,500천원	의연금 100%	
응급생계 구호	최초 7일간	인/일	1,930.30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연금 15%
장기생계 구호비	1~3개월	1인/1일	1,787.23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연금 15%
생계보조비	1급	세대	5,000천원	국고 50%	의연금 50%
	2급		4,000천원	가구의 주 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그 유가족	
침수주택 보조비	일부침수	"	450천원	의연금 100%	
	완전침수	"	750천원	"	
주택복구	전파주택	15평형	동 18,000천원	국고 및 지방비(20%) 의연금 (10%) 장기저리융자(60%) 자부담(10%)	3,600,000 1,800,000 10,800,000 1,800,000
	10평형	"	12,000천원	국고 및 지방비(20%) 의연금 (10%) 장기저리융자(60%) 자부담(10%)	2,400,000 1,200,000 7,200,000 1,200,000
세입주자보조비	반파주택	"	9,000천원	국고 및 지방비(20%) 의연금 (10%) 장기저리융자(60%) 자부담(10%)	1,800,000 900,000 5,400,000 900,000
아파트 입주	13평형	"	입주보증금 및 6개월임대료	국고 및 지방비 50% 의연금 50%	
무상양곡지급	30~50%미만 피해	"	양곡 3가마	국고 70% 국고 또는 의연금 30%	(1ha미만 경작 농가)
	50~80%미만 피해	"	양곡 6가마		(2ha미만 경작 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이와 유사한 재산 소유의 어망, 수산 증·양식 시설 등 피해 어가)
	80~100% 이상 피해	"	양곡 10가마		

우리나라 주요 기상기록

기상상황	기상값	장소	기간	비고
강수량	1시간 최다	118.6mm	서울	42년 8월 5일
	1일 최다	547.4mm	전남 장흥	81년 9월2일
	2일 연속	630.9mm	"	81년 9월2~3일
	3일 연속	659.7mm	전남 해남	81년 9월1~3일 태풍 아그네스 영향
	월 최다	1,354mm	서울	40년 7월
	연 최다	2,416mm	강릉	54년
	연 최소	428mm	장기곶	14년 94년 경북 의성 551.1mm
	강우계속 일수	38일	부산	47년 7월 3일 ~ 8월 9일
	무강우계속일수	84일	대구	64년 11월 6일 ~ 65년 1월28일
기온	1일최대적설량	293cm	울릉도	62년 1월31일 2월1일에도 287cm로 2위
	1일최고기온	섭씨40도	대구	42년 8월1일 94년 7월20일 대구 섭씨 39.4도
	1일최저기온	섭씨영하32.6도	경기 양평	81년 1월5일 95년 1월24일 전북 장수 영하 25.7도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02)3272-0123(代)
FAX (02)3272-0122